'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總括(案)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永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永登浦區區政에 대한 全般的인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의 運營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是正하고 行政運營의 適正 및 能率化를 기하고 豫算의 效率的인 使用을 위한 情報를 獲得하여 '93年度 豫算(안) 承認을 위한 基本資料로 活用, 議政活動에 萬全을 기하고자 함.

2. 監査期間

1992. 11. 26(木)－11. 28(土)까지 (3日間)

3. 監査對象 機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 3 ①항 각호 對象機關

4. 監査對象 事務의 範圍

地方自治法 第9條 地方自治 團體 事務의 範圍

5. 監査方法

각 常任委員會別로 對象機關 監査

6. 監査日程

委員會別	監査委員	監査對象機關	監査期間	監査場所	監査方法	事務補助公務員	備考
行政財務委員會	委員長：金東基 幹事：金種求 委員： 金大燮 徐興善 楊雲燮 李重植 林炳燮 鄭鍾泰 崔圭洛 崔守永 韓箕泰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각동사무소	'92. 11. 26 (목) 90：00~17：00 '92. 11. 27 (금) 09：00~17：00 '92. 11. 28 (토) 09：00~17：00 ※ 감사실 별로 필요시 감사시간 연장	구청	• 報告 • 資料確認 • 質疑答辯	행정주사보 이기왕 지방행정서기 정인철	※ 위원회 별로 필요시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확인감사 실시
市民保社委員會	委員長：李康禧 幹事：尹泰鳳 委員： 金振國 金亨洙 禹日鉉 趙連濟 崔樂熙 崔俊和	• 시민국 • 보건소				지방행정서기 서만원 지방행정서기 구기모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洪祥基 幹事：李龍周 委員： 高光澤 權赫弼 裵基漢 沈定基 金楨煥 金炯基 安周榮 李永揆 李允中 林昌壽 鄭俊鐸	• 도시정비국 • 건설국				지방행정서기 박봉주 지방행정서기 최광묵	

7. 主要監査着眼事項
   ○'92年度 業務計劃 및 實績
   ○'92年度 豫算編成 및 執行實績
   ○'92年度 非豫算事業의 推進實績
   ○1億 以上 工事의 推進實績
   ○'92年度 外部監査機關의 指摘事項 및 是正措置事項
   ○'92年度 各種 民願(陳情, 歎願, 請願 其他) 處理 狀況

8. 進行順序
   ○開會宣布 및 人事
   ○議事日程 上程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被監査機關의 報告事項聽取
   ○書類의 確認·檢討
   ○現場確認
   ○監査結果 講評 및 監査終了宣言

'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2. 11. 23.
제 안 자 :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1. 주 문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92年度 서울特別市 永登浦區政에 對한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따로붙임의 內容과 같이 議決한다.

2. 제안이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 第3項

3. 참고사항
   따로붙임 : 行政監査計劃(案) 1部

'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總括(案)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永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永登浦區區政에 대한 全般的인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의 運營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是正하고 行政運營의 適正 및 能率化를 기하고 豫算의 效率的인 使用을 위한 情報를 獲得하여 '93年度 豫算(안) 承認을 위한 基本資料로 活用, 議政活動에 萬全을 기하고자 함.

2. 監査期間
   1992. 11. 26(木)－11. 28(土)까지 (3日間

3. 監査對象 機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 3 ①항 각호 對象機關

4. 監査對象 事務의 範圍
   地方自治法 第9條 地方自治 團體 事務의 範圍

5. 監査方法
   각 常任委員會別로 對象機關 監査

6. 監査日程

委員會別	監査委員	監査對象機關	監査期間	監査場所	監査方法	事務補助公務員	備考
行政財務委員會	委員長：金東基 幹事：金種求 委員： 金大燮 徐興善 楊雲燮 李重植 林炳燮 鄭鍾泰 崔圭洛 崔守永 韓箕泰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재무국 • 각동사무소	'92. 11. 26 (목) 90：00～17：00 '92. 11. 27 (금) 09：00～17：00 '92. 11. 28 (토) 09：00～17：00 ※ 필요시 감사시간 연장	구청	• 報告 • 資料確認 • 質疑答辯	행정주사보 이기왕 지방행정서기 정인철	※ 필요시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확인감사 실시

7. 主要監査着眼事項

○ '92年度 業務計劃 및 實績
○ '92年度 豫算編成 및 執行實績
○ '92年度 非豫算事業의 推進實績
○ 1億 以上 工事의 推進實績
○ '92年度 外部監査機關의 指摘事項 및 是正措置事項
○ '92年度 各種 民願(陳情, 歎願, 請願 其他) 處理 狀況

8. 進行順序

○ 開會宣布 및 人事
○ 議事日程 上程
○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 被監査機關의 報告事項聽取
○ 書類의 確認·檢討
○ 現場確認
○ 監査結果 講評 및 監査終了宣言

9. 주요 감사사항

○ 문화공보실
- 공보, 보도, 문화, 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 감 사 실
- 감사, 진정 및 비위 사건의 조사 처리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 시민봉사실
-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접수처리, 구·동 민원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시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 총 무 국
- 인사, 주민등록 및 동의 감독
- 기획, 조정, 심사분석. 예산. 행정관리. 법무.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기타 국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계획수립. 시행.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민방위.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0. 감사착안 사항(각 위원별 공통)

○'9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 현황
○'92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1. 감사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

○'92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92년도 예산집행 상황
○'92년도 각급 감사기관(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등)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2년도 각종 민원처리 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2.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형황보고 정취, 자료제출

(2)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1)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 실시 3일전까지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출석요구등

(1)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2)기타 필요한 때는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업무 현황 보고 청취
(4) 구정질의 : 답변
(5)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감사결과 강평)
(6) 감사 종료 선언

마.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5)

(1)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됨.

(2)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바. 이해 관계인의 제척. 회피(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6)

(1)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사.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7)

(1)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13.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다.

(2)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작성요령

(1)감사결과 보고서(안)은 각 소관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회부

'92年度 行政事務 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1992. 11. 23.
제 안 자:시민보사위원장

1. 주 문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92年度 서울特別市 永登浦區政에 對한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따로붙임의 內容과 같이 議決한다.

2. 제안이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 第3項

3. 참고사항

따로붙임 : 行政監査計劃(案) 1部

'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總括(案)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永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永登浦區區政에 대한 全般的인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의 運營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是正하고 行政運營의 適正 및 能率化를 기하고 豫算의 效率的인 使用을 위한 情報를 獲得하여 '93年度 豫算(안) 承認을 위한 基本資料로 活用, 議政活動에 萬全을 기하고자함.

2. 監査期間

1992. 11. 26(木)－11. 28(土)까지 (3日間

3. 監査對象 機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 3 ①항 각호 對象機關

4. 監査對象 事務의 範圍

地方自治法 第9條 地方自治 團體 事務의 範圍

5. 監査方法

각 常任委員會別로 對象機關 監査

6. 監査日程

委員會別	監査委員	監査對象機關	監査期間	監査場所	監査方法	事務補助公務員	備考
市民保社委員會	委員長：李康棹 幹事：尹泰鳳 委員： 金振國 金亨洙 禹日鉉 趙連濟 崔樂熙 崔俊和	•시민국 •보건소	'92. 11. 26 (목) 90：00~17：00 '92. 11. 27 09：00~17：00 '92. 11. 28 (토) 09：00~17：00 ※필요시 감사시간 연장	구청	•報告 •資料確認 •質疑答辯	지방행정서기서만원	※필요시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확인감사 실시

7. 主要監査着眼事項

○'92年度 業務計劃 및 實績
○'92年度 豫算編成 및 執行實績
○'92年度 非豫算事業의 推進實績
○1億 以上 工事의 推進實績
○'92年度 外部監査機關의 指摘事項 및 是正措置事項
○'92年度 各種 民願(陳情, 歎願, 請願 其他) 處理 狀況

8. 進行順序

○開會宣布 및 人事
○議事日程 上程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被監査機關의 報告事項聽取
○書類의 確認·檢討
○現場確認
○監査結果 講評 및 監査終了宣言

9. 주요감사 사항

○시 민 국
－구호, 근로, 직업안정, 장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여성, 청소년, 아동, 유아 및 노인의 복지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업무와 숙박업, 공중목욕업, 이·미용업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상공, 농업, 농지, 식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소음, 진동, 악취 기타 환경공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청소관명의 계몽, 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보 건 소
－지역보건기획, 평가 및 통계등에 관한

사항
－문서, 예산, 인사에 관한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급성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만성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동 진료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0. 감사 착안 사항(각위원별 공통)
○'92년도 주요 시책 및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3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1.감사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
○'92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92년도 예산집행 상황
○'92년도 각급 감사기관(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등)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92년도 각종 민원처리 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2.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형황보고 정취, 자료제출
(2)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1)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 실시 3일전까지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출석요구등
(1)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2)기타 필요한 때는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업무 현황 보고 청취
(4) 구정질의 : 답변
(5)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감사결과 강평)
(6) 감사 종료 선언

마.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5)
(1)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됨.
(2)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바. 이해 관계인의 제척. 회피(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6)
(1)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사.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7)
(1)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13.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다.
(2)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작성요령
(1)감사결과 보고서(안)은 각 소관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회부

'92年度 行政事務 監査計劃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1992. 11. 24.
제 안 자: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주 문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92年度 서울特別市 永登浦區政에 對한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따로붙임의 內容과 같이 議決한다.

2. 제안이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 2 第3項

3. 참고사항

따로붙임 : 行政監査計劃(案) 1部

'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1. 監査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永登浦區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永登浦區區政에 대한 全般的인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區政의 運營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是正하고 行政運營의 適正 및 能率化를 기하고 豫算의 效率的인 使用을 위한 情報를 獲得하여 '93年度 豫算(안) 承認을 위한 基本資料로 活用, 議政活動에 萬全을 기하고자함.

2. 調査期間

1992. 11. 26(木)－11. 28(土)까지 (3日間)

3. 監査對象 機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 3 ①항 각호 對象機關

4. 監査對象 事務의 範圍

地方自治法 第9條 地方自治 團體 事務의 範圍

5. 監査方法

각 常任委員會別로 對象機關 監査

6. 監査日程

委員會別	監査委員	監査對象機關	監査期間	監査場所	監査方法	事務補助公務員	備考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洪祥基 幹事：李龍周 委員： 高光澤 權赫弼 裵基漢 沈定基 金榠煥 金炯基 安周榮 李永揆 李允中 林昌壽 鄭俊鐸	•도시정비국 •건설국	'92. 11. 26 09：00 ∫ '92. 11. 28 17：00 0900~17：00 ※ 필요시 감사시간 연장	구청	•報告 •資料確認 •質疑答辯	지방행정서기 박봉주 지방행정서기 최광묵	※ 필요시 현장확인과 동사무소에 대한 확인감사 실시

7. 主要監査着眼事項

○'92年度 業務計劃 및 實績
○'92年度 豫算編成 및 執行實績
○'92年度 非豫算事業의 推進實績
○1億 以上 工事의 推進實績
○'92年度 外部監査機關의 指摘事項 및 是正措置事項
○'92年度 各種 民願(陳情, 歎願, 請願 其他) 處理 狀況

8. 進行順序

○開會宣布 및 人事
○議事日程 上程
○機關長人事 및 幹部紹介
○被監査機關의 報告事項聽取
○書類의 確認·檢討
○現場確認
○監査結果 講評 및 監査終了宣言

9. 주요감사 사항

○도 시 정 비 국
－주택행정, 시영주택관리, 주택개량 및 무허가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광고물, 간판정비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대책수립, 자동차 운수행정지도·감독, 주차장관리 및 주, 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
－지적전산.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건 설 국
－도로, 지하도, 하천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점용료의 부과·징수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도로 등의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하수도, 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유지와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0. 감사착안 사항(각 위원별 공통)
○'92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 현황
○'92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1. 감사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
○'92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92년도 예산집행 상황
○'92년도 각급 감사기관(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등)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2년도 각종 민원처리 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12.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형황보고 정취, 자료제출
(2)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감사자료 제출 요구
(1)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 실시 3일전까지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출석요구등
(1)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2)기타 필요한 때는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업무 현황 보고 청취
(4) 구정질의 : 답변
(5)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감사결과 강평)
(6) 감사 종료 선언
마.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5)
(1)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됨.
(2)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바. 이해 관계인의 제척. 회피(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6)
(1)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사.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자법 시행령 제17조의 7)
(1)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13.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다.

(2)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한다.

나. 작성요령

(1)감사결과 보고서(안)은 각 소관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회부